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의견서**

**2023년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생명안전후퇴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1)**

---

1) 2023년 7월 5일 발족. 피해자 유족, 건강권 단체, 민변 등 법률, 일터 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 종교, 환경, 청년 등 시민 사회 단체, 민중공동행동 등 105개 단체로 구성.

## 1. 중대재해 80% 발생 50인(억) 미만 사업장

법 적용 대상은 증가, 50인(억) 미만은 감소 주장은 여론 호도용

### ○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심판 제청 기각

- 2023년 11월3일 두성산업의 위헌 심판 제청 기각. 법원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sup>2)</sup>
- 법의 무력화를 위한 위헌 논란이 일정 일단락되자, 사망사고 통계와 법 시행의 효과성 여론 호도에 집중

### ○ 중대재해 80% 50인(억) 미만 사업장 발생. 10년간 12,045명 산재사망

- 지난 10년간 (2013-2022)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노동자는 12,045명, 사고 사망 노동자의 76%가 50인 미만 사업장임. 최근 3년간 (2020-2022)은 80%에 달함<sup>3)</sup>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현황 /년도 별 통계 통합 분석]

년도	산재 사망	사고 사망	50인 미만 사고사망	사고사망 중 50인 미만 비율
2013-2022	19,860	9,380	7,138	76%

년도	산재사망	사고 사망	50인 미만 사고사망	사고 사망 중 50인 미만 비율
2022	2,233	874	707	80%
2021	2,080	828	670	80%
2020	2,062	882	714	80%
총계	6,375	2,584	2,091	80%

2) 2023. 11. 03 창원지방법원 보도자료 :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고 중대한 산업재해가 야기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방법내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 등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022초기1795 기각 결정)

3) 노동부는 ‘재해조사 대상 통계’ 를 별도로 산출하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60%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감독관의 재해조사 대상 판단> 이라는 기준임. 사고 사망은 산재 신청과 승인이 평균 15일이므로, 사고 사망 증감의 추이 분석에는 영향 없음.

## ○ 법 제정 후 감소, 개악 추진 이후 증가. 전체(46), 50인 미만 (37명) 증가

- 법이 제정된 2021년은 전년 대비 사고 사망 감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격 법 개악이 추진된 2022년은 전체 노동자(46명), 50인 미만 사업장 (37명) 모두 사고 사망 증가.

- 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가 450건 이상이나 기소 30건 미만, 판결 10건 미만으로 법 집행 자체가 미미한 상황으로 집행 효과 거론 자체가 불가능.

- 법 시행 효과와 사고 사망 증감을 단기적, 즉자적 연계도 어불성설이며, 적용 대상 기준도 불분명한 통계를 연계하는 방식은 여론 호도에 불과함.

## 2.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

### 1)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정책 전체를 포기하는 것

#### ○ 재발방지 대책, 시정명령 이행, 안전점검, 안전교육도 적용유예

- 법 적용 연기는 ‘안전 법령 준수, 안전교육 실시 점검 6개월에 1회 실시,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정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이행’ 의무 등도 연기 됨.

법 제4조 중대재해 처벌법 제 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개월에 1회 이상 법령 이행 점검, 의무이행 필요조치 할 것
  -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점검하고,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할 것

○ 제2의 메탄올 중독 7명 청년 노동자 실명, 화재 참사 9명 세월전자 반복. 피해자 징벌적 손해배상도 불가능

- 2016년 인천 부천 소규모 사업장 메탄올 중독으로 7명 청년 노동자 실명. 당시 노동부 긴급 메탄올 사용 중지 명령. 노동부 감독 속이고 메탄올 사용으로 추가 실명 피해 발생. 피해 당사자는 4년간의 민사소송 진행. 법 적용 연기되면 정부. 지자체의 각종 시정 조치나 명령이 형해화. 제2 제3의 메탄올 중독 피해 반복
- 2019년 인천 남동공단 세월전자 화재 참사로 9명 노동자 사망. 세월전자는 2016년 화재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사기로 6억7천만원 착복. 이후에도 형식적인 소방 점검, 화재경보기 해제로 참사 발생. 그러나, 법원은 세월전자 대표가 직접 연관이 없다며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되면 재발 방지 대책 없이 보험금 사기에만 골몰했던 제2, 제3의 세월전자 처벌 불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사문화

○ 50인(역)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 이행 불가능한가?

-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규정된 조치이거나, 기본 조치여서 적용유예 연장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다수 안전보건 전문가의 의견임.

내용	적용 여부 및 방안
경영방침 설정	- 기본 사항, 가훈, 교훈과 같이 사훈을 두면 가능함.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 <b>50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없음</b>
유해위험요인 점검	- 형식 제한 없음. 위험성 평가 하면 같음 - 5월 위험성 평가 고시 개정. 간단 체크리스트법 가능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하한액 기준 없음. (예방예산 편성은 기본사항)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권한과 예산, 업무수행 평가	- 관리감독자, 20억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b>일부 적용</b> . 업무 수행 평가는 근무 평가 기준의 하나로 정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	- <b>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원은 적용 대상 아님.</b> - 안전보건 담당자 20인 이상 제조업 등 <b>일부 적용(전문 인력, 전담 인력 아님)</b> - 안전보건 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실시 중임.
종사자 의견 수렴 (산보위, 도급사업 협의체로 같음)	- <b>산보위 등 적용 대상 아님.</b> 도급사업 협의체 적용되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 원청으로 도급 주는 비율 낮음. - 종사자 의견 수렴 <b>형식 규정 없고, 조건에 따라 운영</b>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 정부, 업종별 표준 있음.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동
하도급 안전, 공기 등 기준	- 원 도급인 경우 적용. 대부분 단독 사업장이거나 하청

## 2) 안전법령 위반 사상 사고 3년-5년 이상 징역형 법률도 차등 적용 없음.

- 생명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법령 중 차등 적용 법안은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여타 안전보건관계 법령 중 사상에 대한 처벌 조항은 도입 초기부터 차등 적용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하한형을 두고, 처벌 양형도 더 높은 국내 법안도, 외국의 유사 법안도 도입 초기부터 사업장 규모 따른 차등 적용 없음. 한국의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유예가 예외적인 경우임.

법명	주요내용
환경범죄등의 단속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사람 위해 혹은 상수원 오염 : 3년 이상 15년이하 유기징역. - 위 범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 ‘안전점검을 <u>성실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u> ’ 등으로 규정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안전점검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u>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 .... 그밖에 연구주체의 장 또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는 ...</u> - 위 각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3)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만 적용될 시 문제점

### (1) 현장의 쪼개기 계약, 특수고용 노동자 중대재해 처벌 사각지대 확대

-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기준. 설비, 기계 등으로 위험도 높은 사업장, 원청은 소수의 관리자만 고용하고, 수 백명 하청, 소사장제, 특수고용 노동자 쪼개기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각지대 방치. 기형적 쪼개기 계약이 확산 될 것임.

-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처벌 규정 없음. 최근 중대재해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일부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도입되었으나,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가 연장되면, 날로 증가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예방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략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 받는 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한다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 중략-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솜방망이 처벌로 재범비율 2배 이상. 3년간 9범 이상도 352명

- 2018년 노동부 연구보고서에서 10년간 산안법 위반 피고인 중 전과 미상을 제외하고 초범 대 재범 이상은 3.2배. 2016년은 초범에 대한 재범비율 97%. 일반 형법 43%의 2배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동일 기준 적용 초범 대비 재범비율은 97%, 재범 대비 3범 비율은 76%로, 2016년 보다 증가, 3년간 4범도 473명이고, 9범 이상도 352명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전과 / 출처 범죄분석 (대 검찰청)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21 산업안전공단]

년도	계	미상	전과 없음	전과									
				소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 이상
2017	7,285	5,278	482	1,525	471	300	246	153	96	78	52	24	105
2018	7,442	5,734	359	1,349	355	307	205	154	90	66	37	21	114
2019	8,923	7,118	385	1,420	367	305	211	162	93	74	52	32	124
계	23,650	18,130	1,226	4,294	1,193	912	662	473	284	224	148	85	352
비율	100	76	5	18	5	3.8	2.7	2	1.2	0.9	0.6	0.3	1.4

## (3) 2021년 징역형 평균 7.4개월. 2명 실형, 평균 벌금 488만원

-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지탄 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산안법 선고는 개선되지 않음. 2018년에서 2020년까지 1심 법원 자유형 선고 판결은 징역형 평균은 7.53개월, 2020년 자연인 벌금이 423만원, 법인 벌금이 515만원임

ㄷ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심 법원 판결문 192건 분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판례 분석>에 따르면 2021년은 111명에 대해 평균 7.37개월 징역형 선고, 금고는 7.4개월 징역형중 1.8%인 2명에게만 실형 선고, 금고형은 모두 집행유예였음. 자연인 평균 벌금은 488만원, 법인 평균 벌금은 599만원이었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20 산업안전공단]

년도	징역형	금고형
2018	220	83
2019	233	62
2020	184	36
형의 평균 기간	7.53 개월	7.24개월
실형 선고	28명. 4.4%	9명. 5%
집행유예 비율	95.3%	95%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자연인 벌금(만원)	329	415	411	443	420	462	437	423
법인 벌금 (만원)	346	410	444	501	524	515	509	515

- 경영계의 <노동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2018년에는 업무종사자 88명 등 장비기사, 실무 책임자, 직원, 안전관리자 등 약 100여명이 피고인 직책. 2019년은 업무종사자 47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33명 등 관리자, 말단 직원 약 230여명이 피고인. 2020년은 업무종사자 25명 포함 말단 관리자 80여명이 피고인 직책임.

### 3. 경영계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 조사 결과의 문제점

#### 1) 법 시행 전 ‘법 준수 가능하다’ 50인 이상 31.9%. 50인 미만 59.2%.

노동부 연구 조사에서는 법 준수 이미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다 81%

- 2021년 법 시행 전에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경제단체의 조사에서 법 준수 가능하다 라는 응답이 시행 4개월 전에는 31.9%, 1개월에는 46.3%였음.
- 2023년 법 시행 9개월 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는 법 준수하고 있거나 준수 가능하다 59.2%이고, 비슷한 시기 노동부 발주로 한국 안전학회 조사에서는 법 준수 의무 이미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라는 81%임. 특히 <체계>에 대한 질문인 안전보건 체계 갖추었거나, 내년까지 갖출 수 있다 도 53%임.

- 법 시행 전 준비에 대한 조사에서 50인 이상 기업보다, 50인 미만 기업의 준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경제단체들이 조사 대상과 설문 문구, 조사 결과에 대한 편향적인 발표와 보수 경제지의 일방적 보도 확산으로 여론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음.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내용
경총, 중기중앙회	2021.09	50인 이상 314개 기업	- 법 시행일까지 의무 준수 가능 여부. - <b>전체 가능함 31.9%</b> 어려움 66.5%
중기중앙회	2021.12	중소제조업 50인 이상 322개사	- 법 시행일에 맞추어 의무사항 준수 가능 여부 / 가능 46.3%. 불가능 53.7%
중기중앙회	2023.04	50인 미만 기업 250개사	- <b>법 준수하고 있거나, 시행일에 맞추어 준수 가능 할 것이다. 59.2%</b>
노동부 발주 한국안전학회	2023.03	50인 미만 1,442개사	- <b>안전보건 준수 의무 모두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다. 81%</b>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하기 위한 체계 이미 갖추었거나 내년까지 갖출 수 있다 53%

## 2) 법 시행 어렵다 4월에는 40% VS 8월에는 80% 경영계 조사 신뢰성 문제

### (1) 답정너 조사, 조사 결과 분석, 보수 언론 집중 보도로 프레임 형성

- 중기중앙회의 2023년 4월 조사는 시행일에 맞추어 법 준수 어렵다 40%이고 전혀 불가능하다는 3.2%임. 8월 조사는 아무 준비 못했다 29.7%,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 50.35%를 합산하여 준비하지 못했다 80%로 발표하고, 보수 언론이 집중보도함.
- 동일한 조사기관 임에도 4월 조사는 업종이나 지역 구성 비율을 분배했으나, 8월 조사는 93%가 제조업이고, 조사 대상의 64%가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적용유예 연장을 위한 실태조사 의도가 드러나 신뢰성을 갖기 어려움. 가장 최근 조사인 11월 대한상의 조사는 조사 대상과 설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실태 조사 비교 >

구분	4월 조사	8월 조사
법 준비	법 준수 가능 59.2 % 전혀 불가능 3.2 %	준비하지 못했다 80% 아무 준비 못했다 29.7%
적용 시기	법 준수 가능 제외 1년 연기 41.2%	연기 필요하다 85.9% 기간 질문 없음
조사 대상	제조, 비제조 각 50% 수도권, 전국 각 50%	제조업 93%
응답자		대표이사 41% 임원 23%

## (2) 준비 못한 이유 전문인력 부족 35.4% VS 연기하면 인력확충 하겠다 5.4%

- 경영계는 준비 부족과 적용유예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 안전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들고 있으나, 적용유예가 연장되면 담당 인력 또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응답은 5.4%, 안전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3.5% 에 불과함.
- 한국안전학회 조사에서 이미 실시율이 높게 나타난 안전교육(91%), 보호장비 확충에 응답하고 있고, 컨설팅 실시를 위해 시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컨설팅 실시도 13.7%만 응답하고 있음.

[중기중앙회 2023년 8월 중대재해 처벌법 실태조사]

### 1-2)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2개)

구 분	사례수 (명)	전문인력 부족	예산 부족	의무이해 어려움	현장 근로자 비협조	기타
전체	(892)	35.4%	27.4%	22.8%	9.8%	4.6%

### 2-2)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되는 경우 조치 계획 (복수응답 2개)

구 분	사례수 (명)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
전체	(892)	38.0%	14.6%	18.9%	13.7%

구 분	안전보건 담당인력 확충 또는 전문인력 채용	안전 전담조직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 확대	경영진의 안전경영·리더십 선포	기타
전체	5.4%	3.5%	4.0%	1.8%

## 4. 법 시행 전 필요한 조치로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는 응답 20%

### 1) 노동부 법 시행 10개월 전 1,442개 사업장 조사 ‘법상 의무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다 81%, 안전보건 체계 구축 가능하다 53%’

- 노동부 발주로 한국안전학회가 법 시행 10개월 전인 2023년 3월 50인 미만 1,442개 사업장 대상 조사 실시. 중대재해처벌법상 13개 의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

은 6%임. 법상 의무를 이미 모두 갖추었다. 22%, 현재 준비 중이다 59%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18% 임.

- 다른 질문에는 없는 <체계>에 대한 질문에서도, 내년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를 위한 체계를 갖출 수 있다 53%로 50인 이상 대상 기업의 시행 전 조사보다 높음

## 2)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 20%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전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적용유예가 필요하다는 20%로 법 적용을 전제로 재정지원이나 컨설팅 필요하다는 응답이 61%에 달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복수 응답)]

조치	재정지원	컨설팅	적용유예	처벌 수준 완화
개수	982	689	557	442
비율	36(%)	25(%)	20(%)	16(%)

## 3) 위험성 평가 알고 있다 84%, 안전 활동 보고받고 있다 75%

- 50인 미만 기업의 91%가 안전교육 실시, 종사자에게 안전 활동 보고 받고 있음 75%, 종사자로부터 의견청취 하고 있음이 89%에 달하고 있음. 중대 재해 감축의 중요한 제도로 제기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도 알고 있다 84%, 실시하고 있다 67%임.

- 교육, 종사자 의견 청취, 위험성 평가 등이 제대로 실시 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임.

- 50인(억)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수준이 낮고, 현재 법 시행 준비가 잘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계나 보수 전문가, 보수 언론의 왜곡 과장에 휘둘려 적용 연기로 상당수 기업의 준비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고, <버티면 된다> 라는 인식을 확대해서는 안 될 것임.

**[2023년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 관련 실태 조사  
노동부 발주. 한국안전학회 / 50인 미만 사업장 1,442개사 설문조사지 결과]4)**

조사 문안 및 결과 요약
<p>○ 중대재해처벌법 13개 의무 설문지에 명기되어 있고 조사함.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 알고 있는가 ?</p> <p>- 모두 알고 있다 (18%) 대부분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69% 전혀 알지 못한다. 6%</p>
<p>○ 중대법상 안전보건 준수 의무를 이미 모두 갖추었다. 22% 현재 준비 중이다. 59%, 준비하지 않고 있다 18%</p>
<p>○ 내년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b>체계</b>를 갖출 수 있는가?</p> <p>- 어렵다. 47% - 이미 갖추었거나, 내년까지 구축이 가능하다. 53%</p>
<p>○ 중대법 적용 이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p> <p>- 재정지원 982개(36%) 컨설팅 689개, (25%) 적용유예 557개(20%), 처벌 수준 완화 442개 (16%)</p>
<p>○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인력 또는 조직을 운영 중 46%,</p> <p>○ 안전보건 교육 수행 91%</p> <p>○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서 종사자에게 안전 활동 보고 받고 있다. 75%. 종사자로부터 안전보건 의견 청취하고 있다. 89%. (정기적 의견 청취 38%)</p>
<p>○ 비상 대피 및 구호 조치 매뉴얼 있다. 58%</p> <p>○ 위험성 평가 알고 있다. 84%, 위험성 평가 실시하고 있다. 67%</p>

- 그러나, 대한상의 조사에서 법 시행 이후 100일 조사에서 법 이행하고 대응이 가능하다는 기업은 30%에서 2023년 61.3%로 2배 증가하고, 담당 부서 설치는 45.2%에서 75.5%로 증가, 안전 전담 인력 둔 기업은 31.6%에서 66.9%로 2배 증가함.

4)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가 실제 설문 문안이나 조사 결과 데이터의 통합에 따른 해석이 반영되어 있어,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설문지 문안과 조사 결과 통계를 적시함.

## 5.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투자 확대 및 기업의 인식 변화

발표 기관	주요 내용
2023년 대한상공회 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 담당 부서 설치 법 시행 100일 45.2%--&gt; 2023년 75.5%로 증가</li> <li>- 안전 전담 인력 둔 기업 31. 6%---&gt; 66.9%로 2배 증가</li> <li>- 법 이행 하고 대응 가능 기업 30%--&gt; 61.3% 2배 증가</li> </ul>
2023년5월 중기중앙회	<p>&lt; 중소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시행 이후 안전관련 예산/ 인력 증가 50인 이상 사업장 50.4% 증가</li> <li>- 전혀 그렇지 않다 8.0%</li> </ul>
2023년1월 경총 172개사 조사	<p>&lt;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 조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대비 안전보건 투자예산 확대 38.3%, 유지 56.9% 감축 4.8%</li> <li>- 기업의 95.2%가 확대하거나 유지한다고 답변</li> <li>- 투자 확대 기업의 경우 투자 규모를 45.5%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남.</li> </ul>
2023.2월 이동선 오태근 연구	<p>&lt;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건설현장 관리자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에 대한 연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3곳. 각 30명씩 총 90명 조사. 절반 정도가 건설현장 경력이 10년 이상</li> <li>- 안전시설물 훼손 시 위험을 느끼는가 노동자 중처벌 시행 전후 모두 90% 이상이 위험을 느낀다고 답변 관리자는 시행 전 63.3%, 시행 후 매우 그렇다 30%--&gt; 76.7%로 대폭 상승 기업 측면에서 건설재해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환기시켜 관리자들과의 안전의식 향상 의미</li> </ul>
경향신문 2023 1월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2021년 환경 안전분야에 5조원 넘는 투자 . 전경련 2022 K-기업 ESG 백서 분석</li> <li>- 2021년 100대 기업 환경 안전 투자 규모 2021년 약 5조 4,400억. 2020년의 2조 9,000억 대비 87.6% 증가.</li> <li>-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효과로 분석</li> </ul>
안전신문 2023. 5월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11일 국토부 국내 22개 철도 운영자 및 철도 시설 관리자 대상 시행 철도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li> <li>- 철도 사고는 2021년 64건에서 79건으로 증가. 안전투자 집행액 2021년 2조 2,427억에서 2조6,947억으로 증가, 안전투자 예산 2021년 2조4,482억에서 2022년 2조 8,515억으로 확대 중대재해 처벌법 영향</li> </ul>
현장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시행 전후로 노동자의 선제적 작업 거부권 기업 내 제도화 확산 : 삼성물산, 한국 시설공단</li> <li>-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li> <li>- 지자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질 가동, 사측의 참여 활성화,</li> <li>- 위험성 평가 노동조합 참여 실질화 사업장 사례 확대</li> </ul>

- 2023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발표 : 법 시행 100일 당시 안전보건 담당부서 설치 45.2%였으나, 2023년에는 75.5%로 약 1년 6개월 동안 30%가 증가, 안전 전담 인력을 둔 기업 2배 증가, 법을 이행하고 대응이 가능한 기업도 30%에서 61.3%로 2배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기업의 안전 투자와 인력 증가로 귀결
- 건설현장 관리자 및 노동자 인식 연구에서도 법 시행 이후 기업 측면에서 높은 경각심을 환기 시켜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있다는 분석.
- 일부 기업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작업 거부권 부여. <선 안전조치 요구. 개선 후 작업 실시> 현장 정착 제도화. 특히, 작업 전 안전조치 요구하는 하청 노동자에게 인센티브 직접 부여, 개선 요구 많이 하는 하청 기업에게 인센티브 부여 사례도 있음.
- 중대재해 실질 감축을 위해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는 인식 확산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활성화, 경영책임자 참여 사례 증가. 수 년 동안 거부했던 위험성 평가 노동조합 참여 보장 사업장도 증가.
- 경영책임자 의무 부여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되고 나서야 안전보건관계 법령 준수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현실임

## 6. 중소기업 80% 법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노동자 시민 법 강화되어야 한다 82%. 처벌 수준 완화 반대 72%. 사용자도 64% 반대.

- 경영계와 보수 언론의 중대재해처벌법 때리기, 무용론 언론 공세에도 노동자 시민 및 안전보건 전문가들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찬성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월등히 높음.
- 2022년 9월 국회의장실과 헤럴드 경제 조사에서도 법을 강화해야 한다 53.9%, 완화해야 한다는 17.6%에 불과함. 중대재해전문가넷에서 안전보건 전문가 612명 대상 조사에서는 현행 법 처벌이 부족하다가 47.4% 였으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는 77.1%, 중대시민재해 대상 확대에 81.4%가 찬성함.
- 2022년 10월 재단법인 경청의 의뢰로 한국 갤럽이 중소기업 1,0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기업 대상 조사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찬성이 80%였고, 찬성 이유로는 하청에 책임 떠넘기는 행위 방지가 가장 높았음.

- 2023년 노회찬 재단과 한국 비정규 센터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81.5%임. 특히, 고용인이 있는 사용자도 75.2%가 법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줄일 것이라는 데 동의.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82.2%. 법의 처벌 수위 완화되어야 한다. 찬성 27.6%, 반대 72.4% 임. 고용인이 있는 사용자도 64.5%는 처벌 수준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2023년 2월 국민 불평등 인식 조사. 한국 비정규 센터, 노회찬 재단. 총 2,000명 조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		유고용 사용자	무고용 자영업자	관리 전문직	임금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중재법은 근로자들의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	전혀 동의하지 않음	3.6	2.8	1.7	3.5	3.4	3.5	3.3	
	동의하지 않음	21.3	16.4	24.8	14.0	11.6	15.0	15.2	
	동의함	57.9	65.3	59.2	66.0	71.1	63.8	65.2	
	매우 동의함	17.3	15.5	14.4	16.6	13.9	17.8	16.3	
안전을 위해 중재법은 더 강화되어야 함	전혀 동의하지 않음	4.1	2.8	2.2	2.7	2.4	2.8	2.7	
	동의하지 않음	23.4	12.7	18.8	14.9	13.6	15.4	15.1	
	동의함	51.8	57.8	52.8	55.1	57.8	54.0	55.2	
	매우 동의함	20.8	26.8	26.2	27.3	26.2	27.7	27.0	
중재법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	전혀 동의하지 않음	9.1	10.8	13.3	12.2	14.3	11.3	12.0	
	동의하지 않음	37.1	54.5	45.4	52.5	51.2	53.0	51.8	
	동의함	45.7	31.0	33.6	30.1	28.9	30.7	31.0	
	매우 동의함	8.1	3.8	7.8	5.2	5.6	5.1	5.3	
중재법의 처벌 수위는 완화되어야 함	전혀 동의하지 않음	13.7	22.5	23.1	21.0	25.1	19.2	21.1	
	동의하지 않음	50.8	51.6	48.4	51.6	50.7	52.0	51.3	
	동의함	27.9	20.7	23.3	21.7	19.8	22.5	21.9	
	매우 동의함	7.6	5.2	5.2	5.8	4.4	6.3	5.7	

## 7.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적용 연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귀결

- 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가 400건이 넘었으나, 검찰 기소는 30건 미만. 재판은 10건 미만 임. 검찰은 DL 이엔씨 7건, 롯데건설, 현대건설 5건, 철도공사 4건, 세아베스틸 3건 등 연

속으로 중대재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음.

- 법 적용 연기는 단순한 시기 문제가 아님. 대기업 중대재해는 시간 끌기와 불기소 남발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연기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 시켜 법을 무력화 하는 것임.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중소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에게 버티면 된다 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임.

-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 받지 않게> 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동의하는 당연한 요구임.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면서도 기업의 무지에 가까운 인식, 정부의 무 대책으로 방치되어 왔음. 대상 사업장의 약 60%가 준비하고 있고, 법 시행을 기점으로 뒤늦게나마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와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임.

- 대상 노동자에게는 더 위험한 사업장에서 죽어도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는 차별이며, 법 적용이 연기되면 그나마 진행되던 기업과 정부의 집중대책도 동력을 잃게 될 것임.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전체가 사문화 되어 법의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한 우리 사회의 전환점을 상실하고 원점으로 회귀 될 것임.